

公 告

제목 : 회계예규 개정

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적측량 수수료의 개정에 따라 회계예규 1201.04-64(72. 6. 1) “계약 사무 처리 규정 제67조의 2 제 1항 제 6호의 용역 계약에 관한 기준”을 별첨과 같이 개정 통보되어 왔기 시달하니 용역업무에 착오없이 바랍니다.

제목 : 계약사무처리 규정 제67조의 2 제 1항 제 6호의 용역계약에 관한 기준.

회계예규 1201.04-64(72. 6. 1.) 중 지적측량용역계약 예정가격 작성시 “적용단가”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◇ 지적측량용역계약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단가

가) 토지대장 미등록지의 신규측량

지 역 별	1지번당 수수료액
구 제 시 지 역	2,200 (원)
기 타 시 지 역	1,800
군 지 역	1,500

나) 토지(임야) 대장등록지의 분할측량

1) 토지대장 등록지의 보통분할측량

지 역 별	분할후 1번지당 수수료액
구 제 시 지 역	1,700 (원)
기 타 시 지 역	1,400
군 지 역	1,200

2) 임야대장 등록지의 분할측량

지 적 구 분	분할후 1지번당 수수료액		
	구제시지역	기타시지역	군 지역
원지지적 3점까지	2,600 원	2,200 원	1,800 원
3점 초과 가산	700	600	500

3. 연속지 분할측량

지 역 별	분할후 1지번당 수수료액				
	50 지 번 까	50 지 번 초 과	100 지 번 초 과	500 지 번 초 과	1,000지번 초 과
구제시 지역	원 1,700	원 1,200	원 1,000	원 800	원 700
기타시 지역	1,400	1,000	800	700	600
군 지역	1,200	800	700	600	500

다. 경계 감정측량

1) 토지대장 등록지의 경계 감정

지 적 구 분	1지번당 수수료액		
	구제시지역	기타시지역	군 지역
300 평까 까지	5,900 원	4,500 원	3,500 원
300 평 초과	900	700	600

2) 임야대장 등록지의 경계 감정

지 적 구 분	1지번당 수수료액		
	구제시지역	기타시지역	군 지역
3 정 까 지	4,800 원	4,000 원	3,400 원
3 정 초 과 가산	1,800	1,500	1,200

라. 확정측량

1) 시가지 계획에 의한 구획정리지

구 분	기 준	수수료액
지구면적 10만평 까지	100평당	1,800 원
“ 10만평 초과	“	1,600
“ 30만평 초과	“	1,500
“ 50만평 초과	“	1,400
“ 100만평 초과	“	1,300
“ 150만평 초과	“	1,200

2) 농지개량에 의한 경지정리지

구분	기준	수수료액
지구면적 20정 까지	100 평당	200원
" 20정 초과	"	180
" 50정 초과	"	160
" 100정 초과	"	140
" 150정 초과	"	120
" 200정 초과	"	100

마) 공유수면 매립지 및 미간지 측량

지역별	100 평당 수수료액
구제시 지역	380 원
기타시 지역	280
군 지역	250

바) 복구측량

업종	1지번당 수수료액
지적도 복구	900 원
임야도 "	1,400
임야세부	2,300

사) 기초측량

업종	수수료액	적요
보조삼각측량	9,500 원	1결당
도근측량	900	"

아) 지적공부개조

업종	지역 및 구분	1매당 수수료액	가산액
지적도개조	시가지지	3,600 원	430 원
	농촌지	2,300	270
지적도신조	시가지구획지	3,200	380
	농지개량지	1,400	160
임야도	개조	2,900	350
	신조	1,600	190
지적약도	시지역	700	90
개조신조	군지역	700	80
임야약도		800	100
개조 및 신조			

자) 지적도 및 임야도사

업종	1매당 수수료액	가산액
지적도사	400 원	50 원
임야도사	500	60
지적도 또는 임야도약사도	100	30

※ 전 "가"~"자"호의 비교사항은 1974. 8. 10. 내무부장관 승인지적 측량 업무수수료 규정에 의함.

참고 : 이 예규시행과 동시 회계예규 1201.04-64(72. 6. 1.)의 지적 측량용역 계약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단가 및 회계 1210. 5-3452(73. 9. 24) 회계예규 수정통보는 이를 폐지한다.